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 20 -----김재영 의원의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0. 1. 21
- 다. 상 정 일 자 : 2000. 1. 29(제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에는 공인회계사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자격범위를 확대
- 법령의 근거조항 및 관련 규정 명칭 등을 현행과 맞게 일부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자격범위를 종전에는 공인회계사만 선임하던 것을 세무사도 선임가능하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기타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변경과 관련규정 명칭 변경등 일부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외에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김상수의원 질의)

⇒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으로는 결산서 작성시기가 출납폐쇄후 90일이내에서 80일이내로 단축조정되고, 또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제출시기가 단축 조정되었음.(김재영의원 답변)

○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시기는?(최선용의원 질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조항이 새로 신설되어 1차 정례회 6·7월중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 11·12월중에 예산안 의결 등을 처리하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우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례회 집회일 등 결정에 따라 처리(김재영의원 답변)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